

- 소정면 소정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과업지시서

2024. 3.



세종특별자치시

【목 차】

| | |
|----------------------|----|
| 제1장 과업의 개요 | 1 |
| 1.1 과업명 | 1 |
| 1.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1 |
| 1.3 과업의 범위 | 1 |
| 1.4 위치 및 시설용량 | 1 |
| 1.5 과업 수행기간 | 2 |
| 1.6 예정공정표 | 2 |
| 제2장 과업수행 세부지침 | 3 |
| 2.1 기본 방향 | 3 |
| 2.2 현장 조사 | 3 |
| 2.3 기본 및 실시 설계 | 4 |
| 2.4 설계 보고서 작성 | 6 |
| 2.5 설계도면 작성 | 6 |
| 2.6 공사수량 산출 | 6 |
| 2.7 공사시방서 작성 | 6 |
| 제3장 계약일반사항 | 8 |
| 3.1 행정사항 | 8 |
| 3.2 설계변경조건 | 8 |
| 3.3 과업 중지 및 과업기간의 연장 | 9 |
| 3.4 보안사항 | 9 |
| 3.5 과업보고 | 9 |
| 3.6 기타사항 | 9 |
| 3.7 성과품 제출 | 10 |

제1장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소정면 소정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사용 종료된 소정면 소정리 비위생매립지는 위생적인 폐기물 매립을 위한 환경오염 방지시설 없이 비위생적인 매립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폐기물층에서 발생하는 악취, 침출수 등이 주변지역에 대한 잠재적인 환경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매립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욕구와 사유재산권 제한에 의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과업은 근원적인 환경오염 잠재력의 저감에 의한 주변지역의 쾌적한 생활 환경 실현, 향후 주변지역을 포함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에 따른 합리적인 지역 개발계획 수립 등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정비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 현장조사 (측량조사)
- 기본 및 실시설계
- 기타 부대 업무

1.4 위치 및 시설용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소정리 196-1, 196-2번지
- 규모 : 전체 매립면적 970m²
- 매립용량 : 전체 매립용량 3,200m³
- 매립물 : 생활폐기물

1.5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1.6 예정공정표

| 구 분 | 공 정 | 용 역 기 간 | | | | | 비 고 |
|-----|-------------|---------|-----|-----|------|------|-----|
| | | 30일 | 60일 | 90일 | 120일 | 150일 | |
| | 현장조사 | | | | | | |
| | 기본계획 검토 | | | | | | |
| | 기본 및 실시설계 | | | | | | |
| | 최종보고 및 용역준공 | | | | | | |

제2장 과업수행 세부지침

2.1 기본 방향

- 가. 수급인은 기존 매립지 정비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본 매립지에 기술적으로 시행 가능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나. 본 설계는 상위계획과 발주처의 각종 지표에 부합되어야 하며,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 다. 본 설계에 단계별 시행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하며, 시공시 위험요소 및 변화를 예측하여 시행하되 우선순위가 제시되어야 한다.
- 라. 제시된 모든 설계내용은 기술적으로 시행가능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이어야 하며, 매립지 굴착폐기물 처리계획 및 수준 등 과업 전반에 대해 사전에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마. 본 설계는 환경관련법규, 도시계획 관련법규, 건설기술 관련법규, 기타 관련법규 등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장애의 가변성을 예측하여 반영토록 한다.
- 바. 본 과업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며, 환경적으로 안전한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계획하여야 한다.
- 사. 각 공종별 설계내용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 아. 본 설계에 인용되는 자료는 최근의 자료이어야 하며, 본 과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현장 조사

- 가. 지적·지형 현황측량
 - 1) 현황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 제정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 2) 사업부지 내 모든 지장물 및 지형지물을 상세히 측량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3) 측량성과품의 축적은 1:600을 기준하며, 등고선의 간격은 1.0m로 한다.
 - 4) T.B.M 설치는 훼손되지 않는 장소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5) 측량은 부지의 경계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토지의 소유자 조서 및 지장물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기존 정밀조사 자료와의 비교·분석 시행

- 1) 정밀조사 단계에서 기 시행한 자료와 금회 조사자료를 비교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3 기본 및 실시설계

본 기본 및 실시설계는 정밀조사 및 기본계획에서 검토·선정된 선별이적처리의 정비방안에 대해 시행하며, 다음의 설계기준을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굴착공사

폐기물 굴착에 적합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하며, 굴착 작업시 발생하는 폐기물층 내부 침출수 및 강우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표면침출수의 처리를 위한 배제 방법 및 시설을 안정화공사 진행순서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작업중 강우의 침출수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임시 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안정화공 - 침출수 누출 방지시설

- 1) 침출수 누출방지시설에 대한 설치 심도, 재료원, 시공장비, 시공순서 등 현장 시공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2) 설치 심도는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 3) 침출수 누출방지시설의 설치효과를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관측시설 및 조사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선별 및 이적처리

폐기물 선별은 정밀조사 및 기본계획에서 검토·제시된 방안을 현장에 적용 가능하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설계를 시행하여야 한다.

- 1) 매립폐기물의 선별 종류 및 선별 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폐기물 선별계획에 따른 선별공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 3) 선별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비산먼지 방지대책 및 각종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처리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 4) 재매립 및 소각, 재활용 대상 매립물의 이송시 폐기물의 비산 및 악취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이송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5) 재매립 및 소각, 재활용 대상 매립물의 처리시 대상 처리시설에 대한 처리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부지 복원

- 1) 부지복원은 선별폐기물 중 사용가능한 토사류와 양질의 토사를 혼합하여 복원토록 하며, 최상부층의 토사종류는 상부 부지의 이용목적에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2) 인근 주변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상부 부지의 합리적 토지활용이 가능토록 복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3) 복토층은 현 상태, 시공성 등을 고려하고, 특히 지방도 건설의 안정성 확보 가능한 형식 및 재료를 선정하여야 하며, 침하특성 및 구조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4) 사면부에 대해서는 시공성, 유지관리성 및 전반적인 매립지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 가능한 안정한 사면경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부대시설

- 1) 매립지 유지관리 및 상부토지의 이용을 위한 필요한 시설물을 검토하여야 한다.

바. 환경영향 저감공사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 중 발생이 예상되는 환경오염 요소에 대해 다음 사항이 포함된 각 공종별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정비사업에 투입되는 장비의 운영에 따른 소음
- 2) 폐기물의 날림, 먼지 발생, 공사중 발생 침출수 집수 및 처리
- 3) 작업차량 바퀴 내 폐기물, 운행중 폐기물 날림 등

사. 공사비 산정

- 1) 본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산정·제시한다.
- 2) 정비사업비는 공종별 구분 가능하도록 산정한다.
- 3) 사업비 산정에 필요한 원가계산 및 제반요율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달청 원가계산 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4 설계 보고서 작성

- 가. 매립지 현황 조사, 해당 공종별 공법 비교·검토 내용 및 경제성, 환경적 측면이 반영된 설계 적용 제반기준을 간결·명료하게 수록하여야 하며, 선정된 각 공종별 공법에 대한 현장적용 상세내용 및 이에 따른 주요 설계도면(평면 및 대표단면 등), 수량, 공사기간, 공정관리, 유지관리, 공사 중 환경저감계획 및 재정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 나. 설계 보고서는 국내에서 통용되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인쇄하되, 워드프로세서 작성파일을 별도 납품한다.

2.5 설계도면 작성

- 가. 설계 도면은 전산작업을 기준(AutoCad)으로 하며, 납품시에 전산작업 파일을 포함해야 한다.
- 나. 설계 도면상에 기호로 표시하기 곤란한 사항은 문자로 표시하며, 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다. 각종 상세 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현장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6 공사수량 산출

- 가. 공사수량 산출은 각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량산출 양식은 가능한 통일하여야 한다.
- 나. 공사수량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시행될 수 있도록 단계별 공종을 분리·작성하여야 한다.
- 다. 자재의 사급 및 관급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2.7 공사시방서 작성

- 가. 공사시방서는 각 공종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시방서를 작성하되 공종별 시방서 내에 일반사항, 특기사항으로 구성하고 계약관련 부분과 각 공종별 시방서를 총괄하는 총괄 시방서를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나. 공종별 시방서 중 일반사항은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 이상으로 하되 일반사항 내에는 설계개요, 시공방법 등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하며 특기사항 내에는 일반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1) 각종 장비의 설치 및 운영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 2) 각종 사용자재의 품질기준
- 3) 공사 시방서는 국내에 통용되는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하되, 원칙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와 동종의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해야 하며 납품시 전산 파일을 포함하도록 한다.

제3장 계약일반사항

3.1 행정사항

- 가. 본 과업지시서는 소정면 소정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을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과 정부제정 각종 지방서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 나.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공정표, 책임기술자 선임계, 용역수행자 명단, 자격증 사본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 다.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라. 과업실적 보고는 일정방식에 의거 매월 말일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 마.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때는 협의하여 변경한다.
- 바. 과업수행 중 책임기술자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발주처에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 사. 본 과업수행기간 중 수급인은 발주처에 전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편리를 제공하는데 협조한다.
- 아. 본 과업 추진과정 및 관련기관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발생, 유관기관과의 협의와 기타 발주처의 필요로 인하여 과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2 설계변경조건

- 가. 본 과업시행과정에서 계획 및 용역변경, 사업 인·허가 승인시 관계기관의 승인 조건 및 과업의 범위, 기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한다.
- 나. 용역 시행과정에서 업무의 추가 또는 감소가 된 경우에 한다.
- 다.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다.

라. 위 각 호의 사유로 설계변경요인이 변경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3.3 과업중지 및 과업기간의 연장

가. 본 과업수행 중 민원에 따른 기간 및 관련 인·허가 작성 후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발주처에서 과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의 변경 및 계속작업이 불가능할 때

3.4 보안사항

가. 본 과업의 보안상 누설로 인하여 물의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보안통제를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진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발주처의 해당업무 감독관을 경유하지 않고, 외부단체에 제공 및 공개해서는 안 되며 또한 과업 중 발생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다.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3.5 과업보고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 중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보고 : 발주처 요청시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실시

3.6 기타사항

과업추진 중 또는 완료시 관련부처 협의 및 관련법에 의한 행정절차 등의 보완이 있을시 즉시 보완 처리한다.

3.7 성과품 제출

- 가. 성과품에 제시된 각종 자료는 관련 근거가 있어야 하며 성실히 작성해야 한다.
- 나. 성과품은 소정면 소정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으로 분리하여 별도로 제출한다.
- 다. 성과품

| 구 분 | 규 격 | 수 량 | 비 고 |
|------------|--------|-----|--------|
| 1.설계 보고서 | A4 | 5부 | |
| 2.설계도면 | A3, 백도 | 5부 | |
| 3.설계예산서 | A4 | 5부 | |
| · 설계설명서 | A4 | " | 예산서 포함 |
| · 지방서 | A4 | " | " |
| · 내역서 | A4 | " | " |
| · 일위대가표 | A4 | " | " |
| · 단가조사서 | A4 | " | " |
| · 수량산출서 | A4 | " | " |
| 4.현장조사 성과품 | | | |
| · 지형현황측량 | | 1식 | |
| 5.전산파일 | USB | 3식 | |
| 6.기타필요 자료 | | 1식 | |